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88

발의연월일: 2021. 1. 11.

발 의 자:김승남・양경숙・이개호

박완주 • 이용빈 • 송갑석

인재근 · 송재호 · 김승원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 농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 지의 개발·이용·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3년 단위로 5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이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농태양광 시설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농태양광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 과 영농을 병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2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농어촌소득원"을 "그 밖에 농촌 소득원"으로, "등 농어촌"을 "등 농촌"으로한다.

- 9.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형질변경 없이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시설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용도로"를 "용도 및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 7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

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5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20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일시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용도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일시사용기간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년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영농태양광 시설"이란 「신
	<u>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u>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
	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
	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
	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
	과 영농을 병행하는 시설을
	<u>말한다.</u>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	한) ①
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형질변경 없이 영농태양광 시

<신 설>

-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 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② ~ ④ (생 략)
-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

설을 설지하는 행위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시설 시범단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농태
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u>11.</u> 그 밖에 농촌 소득원
<u>등 농촌</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u>&</u>
도 및 기간 동안
1

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u>경우</u>
-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 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u>경우:</u>
	<u>7년 이내</u>
2.	
	경우: 그 주목적사업의 시
0	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u>ځ.</u>	71.0. [1]
	<u>경우: 5년</u>
1	<u>이내</u>
7.	
	경우: 20

 년이내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